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성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0

발의연월일: 2020. 6. 22.

발 의 자 : 권성동·추경호·태영호

이철규 · 박덕흠 · 홍준표

유영석·金炳旭·윤창현

권명호 · 배현진 의원

(119]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가업을 승계하는 매출액 3,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 두 제도의 입법취지는 '가업승계 지원'으로 동일하지만,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사후상속을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보다 지원범위가 작아 제도 간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.

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증여자를 부모로만 규정하고 있고, 특례적용 한도는 100억원에 불과하며, 특히 적용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사전 가업승계는 어려운 실정임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자 등은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사후상속보다는 사전증여 또는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

상속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가업승계 지원제도 간 불일치를 개선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가업의 영속성 유지 및 경제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증여자의 범위를 현행 부모에서 직계존속으로 확대함(안 제30조의 6제1항).
- 나.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증여 재산을 현행 주식등에서 가업용 자산으로 확대함으로써 개인사업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30조의6제1항).
- 다. 과세특례 적용한도를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향하고, 적용 세율은 10%로 단일화함(안 제30조의6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6제1항 본문 중 "부모(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에서 같다)로부터"를 "직계존속으로부터"로, ""부모"로"를 ""직계존속" 으로"로. "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 라 한다)"를 "토지, 건축물, 주식,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(이하 "가업용 자산"이라 한다)"으로. "제53조 및 제56조"를 "제53 조. 제56조 및 제57조"로. "주식등의 가액"을 "가업용 자산"으로. "100 억원"을 "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"으로. "100분의 10(과세표준 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)"을 "100분의 10"으로 하고.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. 같 은 조 제2항 전단 중 "주식등"을 각각 "가업용 자산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주식등"을 각각 "가업용 자산"으로 하 며. 같은 항 제2호 중 "주식등의 지분"을 "주식의 지분 또는 출자지 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"주식등"을 각각 "가업용 자산"으로 한다.

1. 증여자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200억원

- 2. 증여자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억원
- 3. 증여자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500억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30조의6
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의6(가업의 승계에 대한	제30조의6(가업의 승계에 대한
증여세 과세특례) ① 18세 이	증여세 과세특례) ①
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	<u>직</u>
모(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	계존속으로부터
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	
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	
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	
<u>로부터</u>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	
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	
(이 경우 "피상속인"은 <u>"부모"</u>	<u>"직계</u>
로, "상속인"은 "거주자"로 본	<u>존속"으로</u>
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승	
계를 목적으로 <u>해당 가업의 주</u>	<u>토지, 건축물,</u>
<u>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</u>	주식,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
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증	로 정하는 자산(이하 "가업용
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<u> 자산"이라 한다)</u>
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	
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	
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	제53조, 제56조 및 제57조
고 그 <u>주식등의 가액</u> 중 대통	<u>가업용 자산</u>
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	
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(<u>10</u>	<u>다</u>
<u>0억원</u> 을 한도로 한다)에서 5억	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-

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(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서는 100분의 20)으로 하여 중여세를 부과한다. 다만,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2 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(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중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중여반은 자는 제외한다)로부터 중여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<u>주식등</u>
 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
 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
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<u>주식등</u>

<u>100분의</u>
<u>10</u>
 1. 증여자가 10년 이상 20년 미
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20
0억원
2. 증여자가 20년 이상 30년 미
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
<u>0억원</u>
3. 증여자가 30년 이상 계속하
여 경영한 경우: 500억원
② <u>가업용</u>
<u> 자산</u>
<u>가업용</u>

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. 이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라 <u>주식등을</u> 중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후 <u>주식등을</u> 중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경우에는 그 <u>주식등</u>의 가액에 대하여 「상속세 및 중여세법」에 따라 중여세를 부과한다.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중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.
- 1. (생략)
- 2. 증여받은 <u>주식등의 지분</u>이 줄어드는 경우
- ④ 제1항에 따른 <u>주식등</u>의 증 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

<u> 자산</u>
,
③ <u>가업용 자산</u>
<u>가업용 자산</u>
<u>가업용 자산</u>
1. (현행과 같음)
2
<u>는 출자지분</u>
④ <u>가업용 자산</u>

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창업자금"은 "주식등"으로 본다.

⑤ 제1항에 따른 <u>주식등</u>의 증여 후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, 해당 <u>주식등</u>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,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·⑦ (생 략)

<u>가업용 자산</u>
⑤ <u>가업용 자산</u> -
<u>가업용 자</u>
<u>산</u>
⑥·⑦ (현행과 같음)